

(판촉업체 用)

부품거래계약서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모비스'라 한다)와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이하 '회사'라 한다)는 부품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과 기본원칙)

1. 본 계약은 모비스, 회사 상호간 부품거래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질서를 지키며, 원활한 부품공급을 통하여 국내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의 만족을 도모하고 실수요자 편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비스와 회사는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과 본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계약의 충실한 이행에 있어서도 상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본 계약상의 의무 및 제반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3. 모비스와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 2 조 (공급품목, 공급방법·장소 및 일시)

1. 모비스가 회사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는 품목은 별첨. 거래가능 품목(이하 '부품'이라 한다)에서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가능 품목은 상호간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모비스는 회사가 주문한 부품을 회사에 공급하고 회사는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
3. 회사의 모비스에 대한 부품 주문방법은 모비스가 정한 방식에 따른다.
4. 전항에 따라 회사가 주문한 부품은 회사가 모비스의 사업장에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비스와 회사는 상호 협의하여 주문한 부품의 공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긴급한 수요로 인해 신속한 부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모비스는 회사의 사업장으로 부품을 긴급배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긴급배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항의 경우 긴급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7. 본조에 따라 주문한 부품에 대한 공급일시에 대해서는 모비스와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조 (부품 공급가격)

모비스가 회사에게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은 모비스가 이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거를 수반한 회사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4 조 (부품대금 및 지급방법)

1. 회사는 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에 대한 대금을 전자방식 결제제도(이하 '전자결제제도'라 한다)를 이용하여 모비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전자결제제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모비스와 은행간 및 회사와 은행간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하 '전자결제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회사는 모비스로부터 당월에 공급받은 부품에 대한 총 매입액(이하 '당월 부품대금'이라 한다) 및 결제일(지급일) 등 이용내역을 매 익월 말일(이하 '이용내역 통지일'이라 한다)까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온라인 방식에 의하여 모비스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모비스가 정한 매 기산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일을 정하여야 한다.
3. 모비스는 전항의 이용내역을 접수한 후 이상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그 이용내역을 승인하고, 전자결제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온라인 방식으로 전송한다.
4. 회사는 모비스의 승인을 받은 이용내역에서 정한 결제일(이하 '원 결제일'이라 한다)에 전자결제약정에 따른 결제방식을 통하여 부품대금을 모비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모비스에게 지급한 부품대금에 대한 영수증은 모비스가 부여하는 전산상 승인번호로 같음한다.

제 5 조 (이행지체책임)

1. 회사가 제4조 제2항에 따른 이용내역의 전송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비스는 이용내역 통지일의 익일로부터 5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회사가 그 기간내에 이용내역을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전송거부'라고 한다)에는, 회사는 '해당 채무' 및 '전송거부시점에 성립하였으나 변제기가 미도래한 모비스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유예기한이 종료된 날의 익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모비스의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즉시 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품대금의 결제(지급)를 연체(전자결제계약상 자동 연장(연체유예)조항에 따라 연장된 결제일에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한 경우, 회사는 '연체시점에 성립하였으나 변제기가 미도래한 모비스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유예된 결제일의 익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모비스의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즉시 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부품대금채무 등 모비스에 대한 모든 채무를 해당 이행기(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무의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 상실일)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기의 익일로부터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는 날까지 상법상 이율로 산정하는 지연손해금을 모비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모비스는 사안에 따라 상기 지연이율을 감액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회사가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 결제일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비스는 회사가 해당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본 계약에 따른 부품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최고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방식에 의하기로 한다.

제 6 조 (판매장려금 지급)

모비스는 부품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금할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모비스와 회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7 조 (적정설비 보유 등)

1. 회사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비스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적정량의 부품재고를 상시 보유하여야 하고, 그 부품재고의 상품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창고·사업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시설 및 설비의 상세한 기준은 모비스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회사는 전항의 창고시설 및 설비에 대해 효율적으로 물류관리(입출고 동선, 공간사용 등)를 하며, 고객에 대한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모비스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적정한 수준의 차량 및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고객불편해소와 신속한 부품 공급을 위해 고객 서면 동의 하에 고객정보(이름, 전화번호, 부품내역 등)를 모비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영업장소, 수출금지)

1. 회사는 본 계약 체결 당시의 판매거점 설치장소에서 영업하여야 하며, 판매거점 설치장소 또는 창고의 이전,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점포의 개설, 상호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모비스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부품을 국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해외판매(수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판매한 부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그 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객관적 정황상 수출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비스는 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거래내역, 전산자료, 회계자료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시 모비스는 회사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것을 서면 최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4항에 따른 모비스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기간은 모비스가 회사에 조사개시 사실을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로 한다.
6. 모비스는 제4항에 따른 조사 후 별도의 합리적인 내부 심의절차를 통해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모비스가 제6항의 심의절차에서 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모비스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 후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부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8. 모비스가 제6항의 심의절차에서 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물량, 금액 등의 측면에서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모비스는 회사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그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할 수 있으며, 모비스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심의한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전항 본문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 1) 회사가 전항 단서의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재심의 신청기간 만료일의 익일
- 2) 회사가 전항 단서의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재심의 신청하고 모비스가 이러한 재심의절차에서 제6항에 따른 심의결과와 동일하게 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할 경우, 회사가 모비스로부터 그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점

10. 모비스는 '제8항 본문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가 회사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전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의 효력발생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모비스의 회사에 대한 조사개시 직전 12개월간 월평균 매출액(단, 조사개시 직전 거래기간이 12개월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기간동안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물량을 제외한 범위 내로 부품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11. 모비스가 본 조에서 정한 각 절차(조사, 심의절차, 재심의절차 등)를 진행하는 중에 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즉시 제10항에 따른 부품공급량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 9 조 (지속영업의무)

회사는 계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부품공급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 (담보제공)

1. 회사는 부품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회사에 대한 모비스의 총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비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현금성담보(예금질권 또는 제공가능한 현금성 담보) 또는 부동산 근저당권을 주담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 담보어음보증, 은행지급보증, 금융채권 기타 모비스가 인정하는 담보를 보조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모비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담보적격 여부에 대한 모비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비스의 승인이 있을 경우 회사는 모비스가 지정하는 감정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3. 회사는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보물에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모비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을 담보로서 제공하는 경우 그 설정 및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와 모비스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단, 근저당물건 조사비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
5.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제공한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체 또는 해지된 후 '총 담보금액'이 '제1항의 모비스의 총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모비스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담보설정금액(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대체담보를 담보의 교체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비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 조 (거래한도)

1. 모비스는 전조의 담보를 평가하여 거래한도를 설정하여 부품을 공급한다.
2. 거래한도는 회사가 모비스에게 제공한 담보물의 채권 최고액 및 담보가치 등을 평가하여 정한 금액으로 하며, 모비스는 적합한 방법으로 여신을 부여하여 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선순위 권리의 존재여부, 기타 권리제한상태 및 부동산의 시장가치 등을 감안하여 차감한 잔존금액으로서 거래한도를 설정한다.

4. 모비스는 지가변동 등으로 인해 전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 대한 사전 통지후 재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재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래한도금액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 12 조 (담보권 행사)

회사가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전송거부, 연체 등) 또는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모비스는 별도의 최고없이 즉시 제10조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모비스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항변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CLAIM 및 반품조건)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모비스가 공급한 부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고, 모비스는 모비스의 CLAIM처리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반품처리한다.

- 1) 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회사 또는 회사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 2) 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
- 3) 공급시점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가 모비스로부터 부품을 수령한 후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반품을 원할 경우, 모비스가 해당 부품을 판매한 날(전산상 판매조치한 날을 의미)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비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품요청한 부품이 부품외관, 포장상태 등의 측면에서 재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반품할 수 있으며, 상품성이 상실된 부품의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 없다.

제 14 조 (초과수량의 처리)

회사는 모비스 또는 모비스가 지정한 자의 착오 등으로 인해 모비스에게 주문한 부품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부품을 수령하게 된 경우, 즉시 이 사실을 모비스에게 통지한 후 초과수량부품의 반환 등 모비스가 요청하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1. 모비스와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2. 모비스는 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

1. 모비스는 신부품, 판매부진 부품 등 회사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부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비스는 공급하는 부품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 부품 공급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비스는 계약기간 중 회사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비스는 회사가 주문한 부품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상표 등의 사용)

1.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비스가 상표 및 상호사용 승인을 한 온라인 사이트', '지정간판', 및 '모비스가 지정한 각종 홍보물'(이하 셋을 합하여 '지정대상'이라 한다)에 모비스의 상표 및 상호를 모비스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의 지정대상외의 다른 물건에 모비스의 상표 및 상호를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모비스의 상표 및 상호를 모비스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변형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의 지정대상에 대해 모비스의 상표 및 상호를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모비스가 지정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가 본 조를 위반하여 모비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등)

1. 회사는 모비스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모비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모비스의 상품에 표시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모비스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제품, 모비스의 부품을 사칭하는 제품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위반하는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부품 규격포장' 또는 포장·부품에 부착된 '모비스의 각종 인증마크' 등 모비스의 부품을 표시한 표지를 훼손하거나 변조하여 전시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가 모비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하는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고객 클레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며 모비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금지)

1. 모비스 또는 회사는 본 계약상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거나 다른 판촉대리점 등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모비스의 다른 판촉대리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상 지위를 양도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중간에서 이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가 변경(회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1인 이상을 추가하는 것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본 계약상 지위가 양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모비스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회사는 모비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공급된 부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모비스 또는 회사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모비스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사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비스는 재심사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를 재심사한 후 그 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비밀유지)

1. 모비스와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한 상대방에 대한 영업자료 및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비스 또는 회사가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조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 21 조 (전산시스템 사용)

1. 회사는 모비스와의 원활한 거래 관리를 위해서 모비스가 개발하여 회사에게 지원하고 있는 거래주문 전산시스템인 HAIMS를 통하여 거래함으로써 부품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2. 모비스가 회사에게 운영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HAIMS, SPIN 등 전산시스템은 물론 본 계약에 따라 모비스가 회사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회사는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에게 사용권한을 양도하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제조물책임법 리스크 관리)

1. 회사는 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이 원래의 제조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용법을 넘어서 사용되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여 공급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개조·변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부품의 안전성 및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개조·변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조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모비스가 공급한 부품을 개조/변형함으로써 인하여 사용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는 모비스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모비스가 공급한 부품 자체로는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회사의 공급 상대방인 다른 제조업체 등 중간 유통·제조업체를 거쳐 개조·변형되어 공급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모비스가 사용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분쟁 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모비스를 방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비스를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모비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 (계약해제·해지)

1. 모비스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이용내역의 진송을 거부하는 경우
 - 2) 회사가 연장결제일에 부품대금의 결제(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3) 회사가 부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전자결제계약에 따른 자동연체 유예가 된 경우가 직전 3개월간 5회 이상 발생하는 등 회사의 신용상태 내지 재무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4) 모비스 또는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5) 모비스 또는 회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6) 모비스 또는 회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포함)가 개시되어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 7) 모비스 또는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8) 모비스 또는 회사가 해산, 본 계약과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9) 모비스 또는 회사가 제17조 제2항·제3항,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21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 10) 모비스 또는 회사가 제20조 제1항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11) 모비스 또는 회사(대표이사, 대표자 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포함)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 12) 모비스 또는 회사(대표이사, 대표자 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포함)가 제3자에게 허위사실 유포·사기 등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13)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 심판에 의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하여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모비스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 1) 회사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회사가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영업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부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회사가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모비스는 회사가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한 수준의 부품재고를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한 창고·사업장의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모비스는 회사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동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시정을 한 경우에도, 이후 동 위반행위가 재발된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회사가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본 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최고한 후 동 위반행위가 재발된 때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기한의 이익상실)

회사가 전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되어 모비스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회사는 모비스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모비스의 최고가 없더라도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손해배상)

모비스 또는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6 조 (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의문이 있거나 본 계약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27 조 (계약의 존속기간)

1. 본 계약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2. 당사자 일방은 계약기간 만료 1 개월 전까지 자신의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비스와 회사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현대모비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역삼동)
대표이사 임영득 (인)

서울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117

문인기 (인)

